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7. 2일(월) / 총 4매(본문 2, 붙임 2)
담당 부서	항공안전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정의현, 사무관 고상룡, 주무관 김은진 • ☎ (044) 201-4244, 4255, 4257
보 도 일 시		2018년 7월 3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2일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열기구 비행승인·운영기준 등 안전기준 강화된다!

장치관리·운영기준·조종사자격 강화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 유도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열기구 사고를 계기로 열기구 등 기구류 비행안전 강화 및 사고예방을 위해 「기구류 안전관리 개선방안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.
- 이번 개선방안은 기구류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상요건·비행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, 기구류 조종사자격 취득요건 강화, 비행장치 신고 갱신제도 도입 등 여러 분야의 방안을 담고 있으며,
 - 세부 운영기준에는 기상(풍속 등) 제한치 등 기구류 비행승인 표준, 비행에 필요한 의무 탑재장비, 비행경로별 비상착륙장소 지정, 비행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,
 - 조종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비행경험을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상향 및 자격시험 내용 중 비상절차 비중을 30%이상으로 강화하며, 매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.
 - 또한, 미국·영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소유자가 비행장치 정보를 매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, 이는 기구류 뿐 아니라 현재 신고 대상인 모든 초경량비행장치*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.

*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를 운영 중이나 소유자가 최초 신고 이후 해외거주, 폐업 등으로 실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소유자가 말소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감독대상으로 포함되어 관리 중

- 장기적으로는 조종자 등 사람이 탑승하는 기구류를 초경량비행장치에서 항공기로 분류하여 항공기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나, 업계 등 현장의 의견이 다양한 만큼 정부는 산·학·연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특별 전담팀 운영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“이번 개선방안은 **항공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면서도 안전한 항공레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**, 정부와 항공레저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한다면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항공레저를 즐길 수 있을 것”으로 본다면,
 - 앞으로도 업계의 지속적인 협력과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하고, “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아갈 계획”이라고 강조했다.

붙임 「기구류 안전관리 개선방안」 주요내용 1부. 끝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고상룡 사무관(☎044-201-425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I. 추진배경

- (사고*발생) '18.4.12일 제주에서 관광사업용 열기구가 비행 후 착륙 도중 추락하여 탑승객 13명 중 1명(조종자) 사망(탑승객 12명은 경상)
- * (사고개요) 와산리 운동장(제주 중부)에서 이륙(07:35)하여 35분 가량(약 13km) 비행 후 물영아리 오름(제주 남부) 인근에 착륙과정에서 추락

☞ 유사사례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기구류 특별점검 및 안전기준 진단 등을 실시하고,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기구류 안전관리 강화 추진

II. 추진과제

① 기구류 세부 운영기준 마련

- (승인기준) 비행안전성 검토 등을 위한 세부 표준* 마련
 - * 풍속 3m/s(7knots) 초과 시 또는 강우·강설·안개 등 특이기상 시 비행 불가, 산악지형 등 장애물 영향을 고려한 상세 비행경로 확인 등
- (비행기록 관리) 사업체와 소속 조종자에 대해서는 비행 전 기상·비행경로 확인 내용 등 비행기록을 작성·유지토록 의무화
- (탑재장비) 사업용 자유식 기구류에 대해 기상정보 확인 시스템, 구급용구, 소화기 등 필요 장비 탑재를 의무화
- (비행절차) 비행지역별(산악지형 등) 장애물 회피절차, 자유식 비행 시 비행규칙, 비상착륙장소 지정 등을 포함한 세부 비행절차 마련

② 기구류 조종자 자격 취득요건 등 강화

- (지식·기량) 교육훈련 시 급속강하로부터의 회복, 위기 및 오류 식별 등 비상절차 비중을 강화(10%→30% 이상)하고,
- (비행경험) 국제기준에 따라 35시간(現 16시간)으로 상향하고, 단순 시간 산정방식에서 상승·강하 등 상황별 경험 보유방식으로 변경

- (보수교육) 사업체 소속 조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, 사고사례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정기적(매 3년)으로 이수하도록 법제화
 - * (해외사례) 미국은 연 1회 안전세미나 참석 시 전문(Pro)조종자로 인증하고, 영국의 경우 사업용 조종사는 응급의료처치 과정 등 교육 이수(매 3년) 의무

3 사업자 안전관리 강화

- (항공사업법)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준수하도록 하고, 위반 시 처분(사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) 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*
 - *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기준(자본금 등) 및 제한기준(안전 우려 등)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
- (항공안전법) 사업자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처분(2백만원 이하 과태료)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보완*
 - * 비행기록 작성·유지, 비행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준수 의무 등

4 비행장치 신고 갱신제도 도입 및 신고·안전성인증 관리 일원화

- (신고 갱신제) 비행장치 소유자 등이 최초 신고 이후 매 3년마다 재신고 하도록 하여 운영 현황과악 등 정부 관리제도 기반 조성
 - * (해외사례) 미국, 영국 등도 갱신제(매 3년)를 시행 중(미갱신 시 자동말소)
- (신고·인증 일원화) 초경량비행장치 신고(지방청), 인증(안전기술원) 수행기관을 안전기술원으로 일원화하여 안전관리 효율 제고

5 항공기 분류체계 개선 등을 통한 기구류 안전관리기준 강화

-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기구류를 현행 초경량비행장치에서 항공기로 분류하고 감항증명, 조종사 자격 등 항공기 수준으로 안전관리
 - 다만, 기구류 소유자 등이 대부분 동호회원이고, 제작산업도 초기 단계임에 따라 국내 시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 마련*
 - * 산·학·연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기구류 인증체계, 조종사 자격, 운항기준, 공역 사용기준 등 검토·마련